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3075호
- 다. 제출일자 : 2025. 8. 11.
- 라. 회부일자 : 2025. 8. 14.

2. 제안사유

-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였음
- 서울 지하철은 개통된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가중되고 있고 수도권 교통망 확대에 이용객이 증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량이 필요함
- 이에 시민 안전 제고 및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전동차 교체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26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 출자규모 : 4,905억 원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자 현황

- 주요 안전투자사업: 10개 사업 4,905억 원

(단위 : 천원)

구 분	출자액(안)	비 고
계	490,532,110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55,290,500	국비 매칭시비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1,624,000	국비 매칭시비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	28,066,860	국비 매칭시비
4·7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4,545,000	국비 매칭시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28,788,750	국비 매칭시비
서울 지하철 스마트 관제센터 구축	13,500,000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1,450,000	
홍대입구역(2호선) 출입구 신설	1,400,000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314,900,000	
4호선 운영필수시설 현업사무실 설치	967,000	

※ 사업개수 및 사업별 예산액은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다. 출자의 필요성

- 서울시 지하철은 일 6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개통 후 30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수도권 교통망 확대에 이용객이 증가하여 시설투자 필요성이 높으나
- 서울교통공사는 법정 무임승차 제공, 저렴한 운임수준 유지 등으로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어 노후시설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

4. 참고사항

가. 출자 대상기관 개요(현황)

기관현황

- ▶ 설립일자 : 2017. 5. 31.
-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 ▶ 설립목적
 -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및 부대사업
 -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 ▶ 조 직 ('25.7.31.기준)
 - 본 사 : 사장·감사·7본부·5실·46처
 - 현 업 : 1부문·1원·1단·7센터·59사업소
- ▶ 인 력 : 정원 16,606명/현원 16,884명 *임피제 별도정원(226명) 정·현원 미포함

나. 예산조치 :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 요

-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26년도 지하철 분야 출자 예산 편성 이전에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출자 동의안 의의

- 「지방공기업법」 제49조¹⁾ 및 제53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자본금²⁾은 그 전액을 서울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³⁾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사전에 해당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3)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

- 동 동의안은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 중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내용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출자 동의 여부를 서울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별 출자 금액은 향후 예산안 심의 절차⁴⁾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임

■ 출자 내용

- 서울시가 검토 중인 2026회계연도 지하철 분야 출자 규모는 10개 사업 4,905억원으로 2025년도 대비⁵⁾ 2,256억 31백만원(약 85.1%)이 증가하였음
-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업을 살펴보면 계속사업인 서울교통공사 노후 전동차 교체(287억 89백만원),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 센터 구축(135억원) 등의 사업비는 일부 감소되었으나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552억 90백만원), 서울교통공사 공기질 개선(287억 89백만원), 홍대입구역(2호선)

4)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통보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653호, '15.10.20.)

- 보조금과 달리 출자·출연은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지방의회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출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출자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5) 2025년 출자금 현황: 264,901백만원(본예산 258,181백만원, 추경 6,720백만원)

출입구 신설(14억원) 등은 사업비가 일부 증가하였으며, 특히 교통공사 공익서비스(PSO) 손실 보전 및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3,149억원)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여 '26년도 출자금은 전년대비 2,256억 31백만원 증가하였음
[세부사항 붙임 참조]

■ 출자 동의 필요성

- 서울교통공사의 일평균 수송 인원은 약 6,605천명⁶⁾으로 지하철 1~8호선 운영(276역, 299.2km, 전동차 3,667량)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수탁운영(13역, 13.6km, 전동차 102량) 하고 있으며 지하철 역사공간 개발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 지하철은 '74년 1호선⁷⁾ 개통 이후 5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시설의 재투자과 지하철 이동 편의 및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꾸준한 시설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 재원 부족으로 인해 개선 사업이 조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6) 출처: 서울특별시, 시정통계(2025.7.7. 갱신자료)

7) 1974년 8월 15일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서울역~청량리 구간)

-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1인당 수송원가⁸⁾ 대비 요금 현실화 비율은 53.9%에 불과한 상황이며, 노인·장애인·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서비스 제공⁹⁾에 따른 손실¹⁰⁾로 인해 매년 운영 적자가 가중¹¹⁾되고 있고 그간 경영혁신을 통해 자산매각, 임대 및 광고수입 증대, 역명병기 유상판매 등의 여러 자구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재원 전액 확보가 불가능해 안정적인 운영은 어려운 구조임

- 이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1~8호선 노후시설 개선과 노후 전동차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 매칭비율 등에

8) 지하철 1인당 수송원가

(2024년 기준)

구 분	수송원가	평균운임	부족액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율
서울교통공사	1,853원	998원	855원	53.9%

※ 수송원가 = 총괄원가(영업비용+자본비용(관리운영권상각비 미포함))/수송인원(승차인원기준)

※ 평균운임 = 운수수입/승차인원 ※ 부족액 = 수송원가-평균운임

※ 수송원가대비 평균운임율 = 평균운임/수송원가

9) 65세 이상 노인(「노인복지법」),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10) 법정 무임승차 손실비율 현황(최근 5년간)

(단위: 억원)

구 분	연평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당기순손실(a)	7,923	△11,137	△9,644	△6,420	△5,173	△7,241
무임승차손실(b)	3,275	△2,643	△2,784	△3,152	△3,663	4,135
손실비율(b/a)	45.9%	23.7%	28.9%	49.1%	70.8%	57.1%

11) 서울교통공사 재무상태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 산	131,990	133,403	150,840	154,227	156,676	158,036
부 채	46,455	62,535	66,072	65,570	68,322	73,473
자 본	85,535	70,868	84,768	88,657	88,354	84,563
당기순손실	△5,865	△11,137	△9,644	△6,420	△5,173	△7,241
누 적 적 자	149,547	160,684	170,328	176,748	181,921	△189,222

따라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서울시는 2026예산안 심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자구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출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사업관련 현황

○ '25년 : 264,901백만원(본예산 258,181백만원, 추경 6,720백만원)

'26년 : 490,532백만원 증 225,63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5년 (a)	'26년 (b)	증 감 (c=b-a)	비 고
합 계	264,901	490,532	225,631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9,902	55,290	35,388	국비:시비:공사 =30:35:35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39,198	41,624	2,426	국비:시비:공사 =30:35:35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5,333	—	△25,333	시비 100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12,588	28,789	16,201	국비:시비:공사 =30:35:35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	75,805	28,067	△47,738	국비:시비:공사 =25:37.5:37.5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1,320	1,450	130	시비:공사=50:50
서울지하철 스마트관제센터 구축	42,659	13,500	△29,159	시비:공사=50:50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및 확장	2,405	—	△2,405	시비:공사=50:50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9,240	—	△9,239	시비:공사=50:50
4·7호선 전동차 증차	5,380	4,545	△835	국비:시비:공사 =25:37.5:37.5
지상역사 동행쉼터 설치	1,925	—	△1,925	시비:공사=50:50
홍대입구역(2호선) 출입구 신설	181	1,400	1,219	시비:공사=50:50
4호선 운영필수시설 현업사무실 설치	3,000	967	△2,033	시비 100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	314,900	314,900	시비 100
캐노피, 환기구 등 의원발의 포함	25,965	—	△25,965	시비 100

※ 기재금액은 '출자 동의안 제출 기준' 금액으로, 실제 편성액과 다름